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의안 번호	3132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9월 3일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대안의 제안경위

- 서호연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제2742호)과 김용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제2786호), 임만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의안번호:제2999호)을 일괄 심사한 결과,
- 3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, 내용을 통합·조정하여 「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(대안)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.

2. 대안의 제안사유

- 국가유공자, 참전유공자 등의 보훈 관계법령 관련 유공자들을 우대하고, 경로자 우대 및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 측면에서 도시공원 내 운동시설(체육시설) 이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3. 대안의 주요골자

가. 국가유공자 등의 보훈관계 법령 대상자, 영유아 및 노인,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운동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0조제3항 신설).

나. 별표 2 제1호 “체육시설”을 “운동시설”로 하고,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함
(안 별표 2).

다. 별표 5 및 별표 6의 제목을 수정함(안 별표 5, 별표 6).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대안)

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제2호 중 “미만의 사람, 65세 이상의”를 “미만 또는 65세 이상인”으로, “1인”을 “1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및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”를 “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

12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

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운동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
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)
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

4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
5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
6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7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8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
9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10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11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5의 제목 중 “(제31조제1항 관련)”을 “(제32조제1항 관련)”으로 한다.

별표 6의 제목 중 “(제32조제1항 관련)”을 “(제33조제1항 관련)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 지]

[별표 2]

공원시설 이용료(제15조제1항 관련)

1. 운동시설

공원별	종 별		사용기준	금 액(원)		비 고
				체육경기	기타행사	
공통	잔디광장		1㎡당, 2시간	20~40		◦토, 공휴일은 이용료 30% 가산 ◦야간에는 이용료 30% 가산(토, 공휴일은 제외) ◦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 의 50% 할인 ◦풋살장은 청소년 이용시 30% 할인, 어린이는 무 료(이 경우 청소년 및 어린이의 팀 구성원 비율이 50% 이상일 때 적용)
	일반운동장(광장)			5~10	10~20	
	축구장	잔디	1회 2시간	120,000~156,000	300,000~390,000	
		인조잔디		55,000~82,500	110,000~143,000	
	풋살장	10인용		25,000~32,500		
		6인용		15,000~19,500		
	테니스장	실외	1면당, 2시간당	8,000~16,000		
		실내	1면당, 2시간당	25,000~37,500		
	파크골프장		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	4,000~6,000 3,000~4,000 2,000~3,000		◦평일 단체 이용시 30% 할인
	파크골프장 물품대여료		클럽(1회당, 개당)	1,000~2,000		
국궁장		1일(3시간)	2,000~4,000			
		1개월	20,000~40,000			
서울대 공원	성인야구장	1일	70,000~91,000	200,000~260,000	◦토, 공휴일은 이용료 30% 가산 ◦야간에는 이용료 30% 가산(토, 공휴일은 제외) ◦야간 이용시 전기료 별도 납부 ◦전광판 이용시 전광판 이용료 별도 납부 ◦리틀야구장은 주간만 운영	
		3시간	42,000~54,600			
	리틀야구장	1일	35,000~46,000	100,000~130,000		
		3시간	21,000~27,300			

2. 휴양시설

공원별	종 별		사용기준	금 액(원)	비 고
공통	야영장 (캠핑장)	일반	야영장소 1회당	10,000~30,000	◦입소일(1박2일 기준)이 공휴일이 아닌 월~목 요일인 경우 20인(야영장소 5면) 이상 이용시 30% 할인
		글램핑	야영장소 1회당	90,000~120,000	
		캠핑시설	개소당 (바비큐존 등)	5,000~20,000	
		전기료	전기 1회당	3,000~5,000	
	야영장(캠핑장) 물품대여료		야영텐트 1회당	5,000~20,000	
			1인용매트 1회당	1,000~1,500	
서울대	서울대공원		어 른 1회당	2,000~4,000	

공원	캠핑장	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	1,500~3,000 1,000~2,000	
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3. 교양시설

공원별	종 별	사용기준	금 액(원)	비 고
공통	강의실	1㎡당, 1시간당	200~300	- 회의실 등 강의실과 유사한 형태나 용도를 가진 시설 포함 -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-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100% 가산 2시간 초과시 초과시간당 이용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50% 할인 - 공원이용 활성화 및 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
	공연장 (복합문화공간 포함)	1㎡당, 1시간당	100~200	- 일(8시간) 단위 계산 - 야간은 주간 이용료의 30% 가산 - 부대시설 및 장비 이용료는 별도 산정 - 실내공간에 한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옥상공간을 포함한다. - 다음 사항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한다. -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40조에 따라 별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- 개정 시행일 기준에 관리위탁 및 사용·수익허가된 경우에는 협약기한까지 적용 - 국가시설로 시설 관련법 등 별도 규정에 의해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
	야외무대	2시간당	100,000~150,000	
	청소년 체험의 숲	어 른 1회당 청소년 1회당 어린이 1회당	8,000~12,000 5,000~8,000 3,000~5,000	평일 단체 이용시 30% 할인

4. 기타

공원별	종 별	사용기준	금 액(원)	비 고
공통	사진·영상 촬영녹화	최초 1시간 초과시간당	13,000~19,500 6,500~13,000	영리행위에 한함. 다만, 홍보 및 마케팅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다.
	공원이용 프로그램참가비	1회당(1일당)	1,000~20,000	
	입장권 발매행사	입장권을 발매하는 유료행사	입장권 발매총액의 10~15%	- 시정홍보 및 공원이용 활성화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면제할 수 있음 - 장소 이용료, 점용료는 별도 징수
남산 공원	차량통행료	승합자동차 (16인승 이상)	3,000~6,000	순환버스·시티투어버스·긴급 및 통행허가차량·장애인 콜택시·장애인심부름센터차량은 무료
		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 (15인승 이하)	2,000~4,000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0조(요금의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.	제20조(요금의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6세 미만 ^의 사람, 65세 이상 ^의 사람과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인 포함)	2. --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-- ----- ----- ----- 1명 -----
3. ~ 8. (생 략)	3. ~ 8. (현행과 같음)
9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	9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
10. · 11. (생 략)	10. · 11. (현행과 같음)
12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	12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에 해당하는 사람
13. ~ 16. (생 략)	13. ~ 16.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100 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

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2의 운동시설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

2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인
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
보호자 1명 포함)
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
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
제1항 각 호의 사람

4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
률」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

5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
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
해당하는 사람

6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
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
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
하는 사람

7.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
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
에 해당하는 사람

8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
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에
해당하는 사람

③ (생 략)

9.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
10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11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4조의5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1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
-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